

부속서 3-나 특정상품의 취급

1. 원산지 부여

- 가. 제3.7조에 규정된대로 수출을 위해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공정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품으로 재수입되고, 제7항에 언급된 목록과 이후 개정에 반영된 제3.5조에 언급된 “특정 물품”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. 다만,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¹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나.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이 장의 관련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3.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적용된다.

2. 제3.5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

- 가. 제3.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²에 의하여 발급된다.
- 나.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그 상품에 제3.5조가 적용됨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한다.
- 다.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3.5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적용된다.
- 라. 한국은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에 따라 베트남 관세당국이 제3.5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.

3. 특별 세이프가드

- 가. 한쪽 당사국이 제3.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그러한 조건 하에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.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.
- 나. 가호에 따라 제3.5조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.

¹ “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”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비용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.

² 한국의 경우, 이 부속서의 목적상, “발급 당국”은 한국의 관세 당국을 말한다.

- 다.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. 다만,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어야 한다.
- 라.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, 가호에 따른 제 3.5 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 개월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. 다만,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마.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, 그 관련 당사국은 제3.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.
 - 1)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.
 - 2)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.
 - 3)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. 그리고
 - 4) 보상의 의무가 없다.

4. 연례 검토

- 가.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제3.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
 - 1) 수출 당사국은 전년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하여 제7항에 나열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, 제3.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. 그리고,
 - 2) 수입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하여,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한다.
- 나. 공동위원회는 제3.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다.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.

5. 분쟁해결

이 부속서의 해석,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 15 장(분쟁해결)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6.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

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 7.1 조(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)를 포함하여 이 협정하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7. 상품 목록

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.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.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.

번호	소호 (2012)	품목명 (소호)
1	121221	식용
2	321310	세트상의 회구류
3	340700	조형용 페이스트(paste)(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),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[세트로 된 것,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·말굽모양·막대(stick)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], 플라스터(plaster)(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)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
4	350610	글루(glue)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[소매용으로 한 글루(glue)나 접착제로서,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]
5	391740	연결구류
6	392310	상자·케이스·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
7	392329	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
8	392350	뚜껑·마개·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
9	392690	기타
10	401699	기타
11	420229	기타
12	481940	그 밖의 포장대[콘(cone)을 포함한다]
13	520839	그 밖의 직물
14	550932	복합사(연합사)나 케이블사
15	560811	제품으로 된 어망
16	580421	인조섬유로 만든 것
17	581092	인조섬유로 만든 것
18	610230	인조섬유로 만든 것
19	610290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20	610711	면으로 만든 것
21	610791	면으로 만든 것
22	610821	면으로 만든 것
23	610822	인조섬유로 만든 것

번호	소호 (2012)	품목명 (소호)
24	610891	면으로 만든 것
25	610910	면으로 만든 것
26	610990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27	611011	양모로 만든 것
28	611120	면으로 만든 것
29	611130	합성섬유의 것
30	611522	합성섬유로 만든 것(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31	611529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32	611594	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
33	611595	면으로 만든 것
34	611596	합성섬유로 만든 것
35	611599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36	620113	인조섬유로 만든 것
37	620119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38	620193	인조섬유로 만든 것
39	620211	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
40	620213	인조섬유로 만든 것
41	620293	인조섬유로 만든 것
42	620312	합성섬유로 만든 것
43	620319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44	620331	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
45	620333	합성섬유의 것
46	620341	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
47	620342	면으로 만든 것
48	620343	합성섬유로 만든 것
49	620433	합성섬유로 만든 것
50	620443	합성섬유로 만든 것
51	620453	합성섬유로 만든 것
52	620462	면으로 만든 것
53	620463	합성섬유로 만든 것
54	620520	면으로 만든 것
55	620530	인조섬유로 만든 것
56	620640	인조섬유로 만든 것
57	620690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58	620711	면으로 만든 것

번호	소호 (2012)	품목명 (소호)
59	620719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60	620799	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
61	620892	인조섬유로 만든 것
62	621143	인조섬유로 만든 것
63	621600	장갑류
64	630231	면으로 만든 것
65	630493	합성섬유로 만든 것(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)
66	630532	중간 벌크컨테이너(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
67	630533	기타[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(strip)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]
68	630612	합성섬유로 만든 것
69	630790	기타
70	650700	헤드밴드 · 내장재 · 커버 · 모자의 파운데이션(foundation) · 모자의 프레임(frame) · 챙 및 턱끈
71	691200	도자제의 식탁용품 · 주방용품 · 그 밖의 가정용품 · 화장품(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)
72	691490	기타
73	732393	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
74	761699	기타
75	841330	연료 · 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(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)
76	842123	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
77	848490	기타
78	850110	전동기(출력이 37.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
79	850300	부분품(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80	851240	윈드스크린와이퍼(windscreen wiper) · 제상기(defroster) 및 제무기(demister)
81	851290	부분품
82	851610	전기식의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
83	851660	그 밖의 오븐, 쿠키 · 조리판 · 보일링링 · 그릴러 및 로스터
84	851690	부분품
85	851770	부분품
86	852990	기타
87	853669	기타
88	853670	광섬유용 · 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
89	853890	기타
90	853990	부분품

번호	소호 (2012)	품목명 (소호)
91	854430	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(자동차용·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)
92	854442	접속자가 부착된 것
93	870892	소음기(머플러), 배기관, 그 부분품
94	870894	운전대·스티어링칼럼(steering column)과 운전박스, 그 부분품
95	870899	기타
96	940510	샹들리에(chandelier)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(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)
97	940592	플라스틱으로 만든 것
98	940599	기타
99	960820	팁(tip)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(porous-tip)으로 된 펜과 마커
100	960910	연필과 크레용(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)

